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1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영배 · 최혁진 · 전용기
문정복 · 서미화 · 고민정
민병덕 · 황정아 · 박균택
서삼석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
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
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
인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보유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량 구매비, 개조비, 운행비 등에 대한 사업. 다만, 운행비의 경우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 탑승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4. ~ 5. (생략) ② (생략)</p>	<p><u>할 수 있다.</u>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